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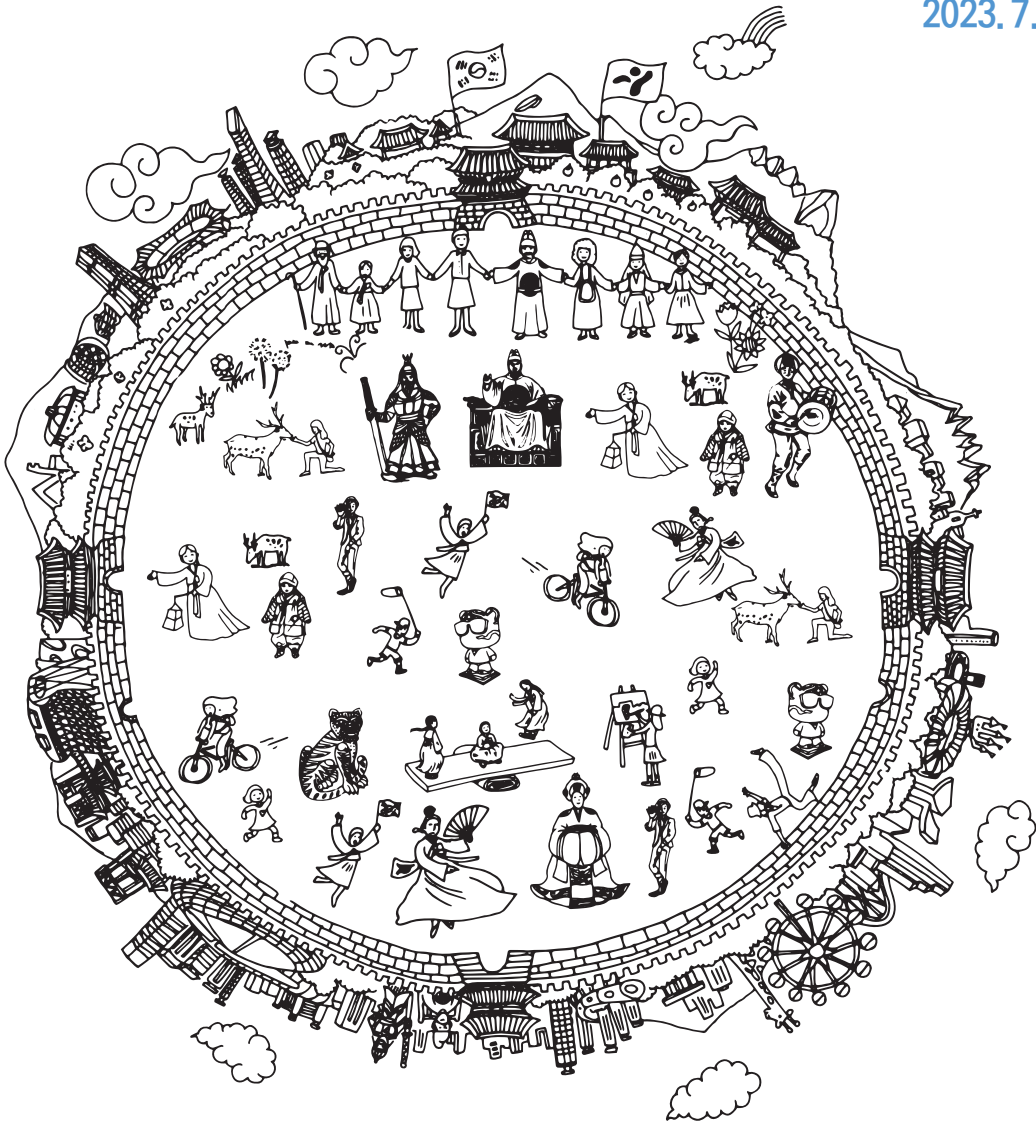
동행·매력
특별시 서울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3889호
2023. 7. 17.(월)



목 차

◆ 자치법규 등

[조 례]

제8766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	2
제8767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	4

[규 칙]

제4576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	6
제4577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	10

자치법규 등**[조 례]****◆ 서울특별시조례 제8766호****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**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

2023년 7월 17일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한강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한강사업추진단을 두며, 한강사업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한강이용증진 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
2. 수상이용 활성화 및 수상여가 공간 확충에 관한 사항
3. 수상관광레저 콘텐츠 강화 및 자연성 회복에 관한 사항

조례 제8448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 중 “2023년 8월 18일”을 “2024년 8월 18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기구의 존속기한) 제21조제4항의 한강사업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4년 7월 16일까지로 한다.

<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>

1. 개정이유

시정 주요업무 및 새로운 행정수요 반영을 위해 한시기구의 연장 및 신설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‘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’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신설(1개) 및 기존 한시기구(3개) 존속기한 만료 예정에 따른 기한 연장

－ (신설) 한강사업추진단 신설

▶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존속기한 1년 신설(‘ 23.7.17. ~ ’ 24.7.16.)

－ (연장) 주택공급기획관·균형발전기획관·자원회수시설추진단 존속기한 연장

▶ 존속기한 1년 연장(‘ 23.8.19. ~ ’ 24.8.18.)

◆ 서울특별시조례 제8767호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

2023년 7월 17일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(조례 제8695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의 표 중 일반직 계란, 3급란, 4급란, 5급 이하 소계란, 전문경력관 소계란, 연구직 계란, 연구관란, 연구사관, 지도직계란, 지도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	10,715					
3	18	8		1	9	
4	258	153	19	8	70	8
5	10,235					
	157					
	408					
	73	8		41	24	
	335					

	25					
	3			3		

부 칙

이 조례는 2023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<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>

1. 개정이유

행정환경 변화 및 새로운 행정수요 반영 등을 위해 총정원 변동 없이 직렬·직급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한강사업추진단 신설로 ‘한강사업추진단장’ (3급) 1명 및 그 산하에 ‘한강사업총괄부장’ (4급) 1명, ‘한강전략사업부장’ (4급) 1명 정원 신설

－ (사업소) 일반직 5급이하 △3 → 3급 +1, 4급 +2

나. 행정환경 변화 및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 등을 위해 연구직(10명) 및 지도직(1명)의 정원 조정

－ (연구직) 407명 → 408명(연구관 +10명 연구사 △9명)

※ 일반직 5급이하 △1

－ (지도직) 24명 → 25명(지도관 +1)

※ 일반직 5급이하 △1

다. 서울대공원의 사육운영직 퇴직 및 임기제 계약 만료에 따른 인력충원을 위해 전문경력관으로 정원 조정(7명)

－ (사업소) 일반직 5급이하 △7 → 전문경력관(동물사육) +7

라. 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에 따라 영등포 아리수정수센터의 고압가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위해 일반직을 전문경력관으로 정원 조정(1명)

－ (사업소) 일반직 5급이하 △1 → 전문경력관(고압가스안전관리) +1

[규 칙]**◆ 서울특별시규칙 제4576호****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**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

2023년 7월 17일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국제협력과”를 “국제교류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국제협력과장”을 “국제교류과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제17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18호를 제17호로 하며,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국제협력과장”을 “국제교류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 제13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3. 서울 글로벌센터 빌딩 운영 및 관리

제8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에 한강사업추진단·총무부·운영부·공원부·시설부·한강사업총괄부·한강전략사업부·한강여가사업부를 두고, 한강사업추진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, 총무부장·운영부장·한강사업총괄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, 공원부장·시설부장·한강여가사업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, 한강전략사업부장은 지방행정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- ② 한강사업추진단장은 한강이용활성화 정책의 총괄 및 조정 등에 관하여 미래한강본부장을 보좌한다.

제85조제3항(중전의 제2항)의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한다.

7. 미래한강본부 누리집 운영·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·유지보수

제8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 제11호를 제8호로 하며, 같은 항 제7호 및 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캠핑장 운영 및 유지관리

9. 수영장·물놀이장 운영 및 유지관리

제85조제7항 및 같은조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한강사업총괄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한강 이용활성화 정책의 총괄 조정·공정관리
2. 한강공원 홍보 총괄 및 이용만족도 조사 분석
3. 각종 공연·축제·문화행사에 관한 사항
- ⑧ 한강전략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1. 한강주운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
2. 항만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
3. 수상교통활성화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
4. 자전거도로 개선 및 조망명소 확충에 관한 사항
5. 수상레저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
6. 한강협력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

제85조제9항(중전의 제3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수상사업부장”을 “한강여가사업부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항 제3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수상스포츠 대회 유치 및 지원
11. 수상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
12. 자연환경 정책수립 및 생물상 조사
13. 생태계 조사, 복원, 보전 및 유지관리
14. 한강의 자연성 회복분야 사업 총괄
15. 캠핑장 및 수영장·물놀이장 조성에 관한 사항

제86조제1항 중 “총무과·기획예산과·문화홍보과를 두고, 총무과장·기획예산과장 및 문화홍보과장”을 “총무과·기획예산과를 두고, 총무과장·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,

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

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생태환경과·공원여가과·녹지관리과·공원시설과를 두고, 생태환경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”를 “공원여가과·녹지관리과·공원시설과를 두고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한강사업총괄부에 한강개발기획과·한강문화관광과를 두고, 한강개발기획과장 및 한강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
- ⑥ 한강전략사업부에 서울항조성과·한강이용증진과·수상공간조성과를 두고, 서울항조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, 한강이용증진과장 및 수상공간조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.
- ⑦ 한강여가사업부에 수상여가과·수상관리과·자연성회복과를 두고, 수상여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, 수상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, 자연성회복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.

제135조제1항 본문 중 “교육지원과를”을 “교육지원과,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을”로, “지방학예연구관”을 “지방학예연구관으로,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전시과장”을 “전시과장·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운영 지원

⑤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
2.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예산, 회계, 복무, 보안, 재산관리
3.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상설전시·기획전시 기획 및 운영
4.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홍보, 교육 프로그램·문화행사 운영
5.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3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의 각 과담당관 공통사항 표 중 “국제협력과장”을 “국제교류과장”으로 한다.

②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의 재난수습 주무부서 표 중 수습주무부서란의 “한강사업본부”를 “미래한강본부”로, “수상사업부 수상관리과”를 “한강여가사업부 수상관리과”로, “국제협력과”를 “국제교류과”로 한다.

③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제2호서식 중 “한강사업본부장”를 “미래한강본부장”으로 한다.

<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>

1. 개정이유

시정 주요업무 및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한시기구 신설 사항을 반영하고, 조직 소관 사무를 조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미래한강본부 내 한시기구인 ‘한강사업추진단’ 신설 및 산하에 한강 사업총괄부·한강 사업전략부 신설, 한강여가사업부(기존 수상사업부) 재편

- 「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」 총괄 및 핵심사업 추진을 위해 한강사업추진단신설·재편 및 기존 부서는 공원 및 한강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수행

나. 경제정책실 내 ‘국제협력과’를 ‘국제교류과’로 명칭변경 및 서울로봇 인공지능과학관 사무를 ‘경제정책과’에서 ‘서울시립과학관’으로 이관

- 국제교류 업무 재편으로 과 명칭 변경 및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을 서울시립과학관의 분관으로 운영함에 따라 업무 이관

◆ 서울특별시규칙 제4577호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

2023년 7월 17일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(규칙 제4558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	11,730	4,690	429	1,157	5,228	226
--	--------	-------	-----	-------	-------	-----

같은 표 일반직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	10,715	4,634	420	392	5,045	224
--	--------	-------	-----	-----	-------	-----

같은 표 3급 소계란, 부이사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3	18	8		1	9	
	18	8		1	9	

같은 표 4급 소계란, 기술서기관란, 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4	258	153	19	8	70	8
---	-----	-----	----	---	----	---

	64	24			40	
	78	57			17	4

같은 표 5급 소계란, 행정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농업·녹지또는농촌지도관란을 삭제한다.

5	1,544	1,048	54	58	337	47
	725	532	50	25	76	42

같은 표 6급 소계란, 행정란, 녹지란, 행정·공업또는시설란, 사육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6	3,681	1,917	178	111	1,371	104
	1,421	886	148	43	270	74

	73	38			35	
--	----	----	--	--	----	--

	78	70			7	1
--	----	----	--	--	---	---

	2				2	
--	---	--	--	--	---	--

같은 표 7급 소계란, 행정란, 공업란, 시설란, 사무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7	3,339	1,301	123	141	1,713	61
	1,239	661	90	59	382	47

	409	24	6	10	367	2
--	-----	----	---	----	-----	---

	547	235	2	5	297	8
--	-----	-----	---	---	-----	---

	70	6	2	1	61	
--	----	---	---	---	----	--

같은 표 8급 소계란, 농업또는녹지란, 기계운영란, 농림운영란, 사무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8	1,104	136	38	66	861	3
	6				6	
	34	1		1	32	
	6			1	5	
	129	42	13	17	56	1

같은 표 9급 소계란, 공업란, 농업또는녹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9	567	3	3	3	558	
	57	1			56	
	8				8	

같은 표 전문경력관 소계란, 나군 소계란, 나군 소계란 아래 동물사육란, 다군 소계란, 다군 소계란 아래 고압가스안전관리란, 동물사육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	157	27	4	3	123	
	67	23	4	3	37	
	16				16	

	86				86	
--	----	--	--	--	----	--

가	16				16	
---	----	--	--	--	----	--

	40				40	
--	----	--	--	--	----	--

같은 표 연구직 계란, 연구관 소계란, 연구관 소계란 아래 학예연구관, 기록연구관, 보건연구관, 환경연구관, 연구사 소계란, 연구사 소계란 아래 기록연구관, 보건연구관, 환경연구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	408	26		199	183	
	73	6		42	25	
	24	5			19	
	3	1			2	

	18			18		
	16			16		

	335	20		157	158	
--	-----	----	--	-----	-----	--

	9	2			7	
	106	2		96	8	
	73	1		58	14	

같은 표 지도직 계란, 지도관 소계란, 농촌지도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	25			25		
	3			3		
	3			3		

부 칙

이 규칙은 2023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<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>

1. 개정이유

시정 주요업무 및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총정원 변동없이 직렬·직급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‘한강사업추진단장’ (3급) 1명 및 산하 ‘한강사업총괄부장’ (4급) 1명, ‘한강전략사업부장’ (4급) 1명 정원 신설을 위해 일반직 정원 조정(3명)

－ 일반직 5급이하 △3 → 3급 +1, 4급 +2

나. 서울대공원(7명) 및 영등포 아리수정수센터(1명)의 전문경력관 충원을 위해 일반직 정원 조정(8명)

－ 일반직 5급이하 △8 → 동물사육 나군 +2 및 다군 +5 (서울대공원), 고압가스안전관리자 다군 +1(아리수정수센터)

다.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 및 필요분야 인력 재배치를 위해 연구직·지도직군 등 직렬·직급 간 조정(총18명)

－ ① 연구관지도관 직급 조정 ② 한강사업추진단 신설로 실무인력 보강 등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